

등록번호	
등록일자	
결재일자	
공개구분	대국민공개

협조자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일부 개정**

주요 검토사항	
정책 중요도	보통
민원·갈등가능성	낮음
기관간 이견가능성	낮음
홍보대책 필요성 (홈페이지 등록 필요성)	보통 (보통)
서민생활 관련성	보통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 방안 (‘09.1.29)”에 따라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을 개정 하고자 함

주택토지실  
택지개발과

#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개정내용

## 1.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 방안(‘09.1.29)”에 따라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일부를 개정

## 2. 주요내용

-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공동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 시행자에게 제4조에 따라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와 제5조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공익성 판단 기준이 적정한지 여부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검토하려는 것임

※ 붙임 :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개정(안)

##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개정안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공동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시행자에게 제4조에 따라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와 제5조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공익성 판단 기준이 적정한지 여부를 2012년 12월 31까지 다시 검토하여 개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해양 부장관은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공동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시행자에게 제4조 에 따라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 류의 종류와 제5조에 따른 주 택건설등 사업자의 공익성 판 단 기준이 적정한지 여부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검 토하여 개선 여부를 결정하여 야 한다.</u></p>